

고흥군의회의 공고 제2024-24호

「고흥군의회의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와 「고흥군의회의 회의 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0일

고 흥 군 의 회 의



고흥군의회의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2. 1. 13. 시행)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는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의원의 의안 발의 정족수 기준을 본 조례에 규정하여 의안 발의 요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현행)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

(개정)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 및 제76조

나. 정례회 집회일 정비(안 제3조제2항)

(현행)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

(개정)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는 그다음 날

다. 의원의 의안 발의 조항 신설(안 제6조)

-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명확화,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등)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 (안 제2조제1항, 안 제4조제1항)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예고기간 : 2024. 8. 21. ~ 2024. 8. 27.(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

다. 의견 제출받는 곳

- 1) 우편 : (59542)/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의회의회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 2) 전화 : 061-830-5032, 팩스 : 061-830-5595

붙임 1.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3조·제54조·제56조”를 “제53조·제54조·제56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공휴일”을 “토요일·공휴일”로, “그 다음날”을 “그다음 날”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연기 할”을 “연기할”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안의 발의) 법 제76조에 따른 의원의 의안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고흥군의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①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은 <u>의회 운영위원회</u>와 협의하여 회의 총일수를 가감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 ① (생략)</p> <p>②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u>공휴일</u>인 때에는 <u>그 다음날</u>에 집회한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p>	<p>제1조(목적) ----- ----- <u>제53조·제54조·제56조 및 제76조</u>----- ----- -----.</p> <p>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① ----- ----- ----- ----- <u>의회운영위원회</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토요일·공휴일</u>----- ----- <u>그다음 날</u>-----.</p> <p>1. ~ 3. (현행과 같음)</p> <p><u>제6조(의안의 발의) 법 제76조에 따른 의원의 의안 발의는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u></p> <p>제7조(준용) (현행 제6조와 같음)</p>

항 이외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사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사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사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사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붙임 2]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_____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_____

○ 전 화 번 호 : _____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